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300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관세사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 마련 등 (박성훈의원안)	3

I. 개요

1.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30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8. 21.
- (3) 회 부 일 : 2025. 8.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법」 및 「변리사법」은 변호사·변리사 또는 법무·특허법인 등의 업무홍보와 관련하여 광고 매체, 광고 금지사항, 광고 심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관세사 등이 아닌 자가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을 뿐, 관세사 등이 그 업무를 홍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변호사법」 등과 같이 관세사 등의 업무 광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이 업무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매체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입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관세사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 마련 등(박성훈의원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 관세사등 광고의 기준(제11조의2) ○ 관세사등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업무 실적 등을 신문·잡지·방송 등에 광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 금지 1. 관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관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관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관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 관세사등의 광고 심사를 위한 광고심사위원회 운영 ○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가 정함 ○ (벌칙 규정 신설) 1, 2호를 위반하여 광고한 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시행일) 이 법 공포 후 6개월

* 박성훈의원안 2025. 8. 21. 발의(의안번호 12300)

☐ 개정안은 관세사등의 광고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

는 광고,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였고 ② 관세사등의 광고 심사를 위해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고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관세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고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① (관세사등의 광고 기준 마련) 현행 「관세사법」은 관세사 등이 아닌 자가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을 뿐,¹⁾ 관세사등이 자기 또는 그 사원의 업무를 홍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광고의 기준에 대하여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일반적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²⁾에 따라 제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관세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무역 및 통

1) 「관세사법」

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① 제7조, 제17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또는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가 아닌 자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이 아닌 자는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 분야는 물품의 원산지, 세율 적용, 통관 절차 등 복잡한 규제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 보호 중심의 일반 표시·광고 규제만으로는 통관업 관련 서비스·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점에 따른 납세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개정안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관세사법」 제27조에 따른 징계 사유³⁾에 해당하게 되어 관세청장이 등록취소, 직무정지,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관세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수입 질서를 확립하고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한편, 개정안은 징계와 별도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개정안에 따른 1호(관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및 2호(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위반

3) 「관세사법」

제27조(징계)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 회장이 징계를 건의한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하여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거짓 내용의 광고’와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는 ‘허위(虛僞)’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서 다른 ‘과장(誇張) 또는 부당(不當)’한 광고 유형과는 구분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유사입법례인 「변호사법」과 「변리사법」에 업무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추가적으로 2025년 9월 조세소위를 통해 세무사등의 광고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세무사법」대안이 의결되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광고 기준에 관한 유사 입법례와 개정안 비교]

변호사법(현행)	변리사법(현행)	관세사법 개정안
제23조(광고)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	제8조의5(광고) ② 변리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	제11조의2(광고) ② 관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

변호사법(현행)	변리사법(현행)	관세사법 개정안
(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리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관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리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관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리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관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 ② (광고의 심사를 위한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 근거 마련) 개정안은 광고 기준을 마련함과 더불어 광고에 대한 심사를 위해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 및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전문직 단체가 직역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광고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관세사법」의 유사입법례인 「변호사법」과 「변리사법」의 심사위원회 역시 동일한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광고 심사위원회에 관한 유사 입법례와 개정안 비교]

변호사법(현행)	변리사법(현행)	관세사법 개정안
제23조(광고)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8조의5(광고) ③ 변리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가 정한다.	제11조의2(광고) ③ 관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가 정한다.

□ 다만, 정부는 관세사 시장 규모, 관세사 숫자 등을 감안하였을 때 별도로 광고심사위원회를 설립할 필요성은 낮다는 입장임. 2024년 12월 기준 관세사의 등록 회원수는 2,247명으로 변호사(30,755명), 변리사(4,668명)에 비해 그 수가 적고,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금액 역시 7,509억원으로 변호사(9조 5,971억원) 및 변리사(1조 2,771억원)에 비해 수와 매출 규모가 작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세무사 역시 한국세무사회 자체 규정으로 광고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을 뿐, 법정 광고심사위원회는 설립되어 있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8